

-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6. 8. 26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16.

다. 상 정 일 자 : 제5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6.10.21)
제5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6.10.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강명종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합 계		77,420,129	100,448,514	92,883,184	7,565,330
일 반 회 계		67,676,239	86,693,142	81,147,750	5,545,392
과목	지 방 세	16,589,000	18,671,661	16,871,206	1,800,455
	세 외 수 입	15,775,818	32,837,602	29,092,665	3,744,936
	조 정 교 부 금	18,921,000	18,920,905	18,920,905	0
	보 조 금	14,808,013	14,782,742	14,782,742	0
	지 정 재 원	1,582,408	1,480,232	1,480,232	0
특 별 회 계		9,743,890	13,755,372	11,735,434	2,019,938
과목	의 료 보 호 기 금	3,469,421	3,533,792	3,469,464	64,328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06,714	329,449	317,640	11,809
	새마을 사업 소득	142,600	152,234	137,234	15,000
	주 차 장	1,718,994	4,830,455	2,901,654	1,928,801
	주거환경 개선 사업	942,230	1,076,457	1,076,457	0
	장립 유수지 이설	3,132,852	3,800,768	3,800,768	0
	발전소 주변 지역	31,079	32,217	32,217	0

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도 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77,420,129	13,572,797	90,992,926	71,305,000	10,043,970	9,643,956
일 반 회 계		67,676,239	12,880,881	80,557,120	63,617,790	9,061,618	7,877,713
과 목	의 회 비	760,516	0	760,516	648,423	0	112,092
	일 반 행 정 비	28,724,269	1,223,496	29,947,765	25,019,651	2,019,671	2,908,442
	사 회 복 지 비	16,715,332	403,249	17,118,581	16,456,472	149,205	512,904
	산 업 경 제 비	1,112,294	0	1,112,294	1,010,228	0	102,065
	지 역 개 발 비	15,471,145	10,260,908	25,732,053	18,214,724	4,736,372	2,780,957
	문화 및 체육비	3,510,766	1,118,228	4,628,994	1,352,157	2,116,562	1,160,275
	민 방 위 비	161,194	46,000	207,194	189,295	0	17,898
	지원및기타경비	1,220,723	△171,000	1,049,723	726,836	39,808	283,078
특 별 회 계		9,743,890	691,916	10,435,806	7,687,210	982,352	1,766,243
과 목	의료 보호 기금	3,469,421		3,469,421	3,461,864		7,557
	영세민생활안정 기 금	306,714	0	306,714	172,000	0	134,714
	새마을사업소득	142,600	0	142,600	0	0	142,600
	주차장특별회계	1,718,994	0	1,718,994	255,443	0	1,463,550
	주거환경개선사업	942,230	24,000	966,230	238,323	718,310	9,597
	장림유수지이설및 공유수면매립사업	3,132,852	667,916	3,800,768	3,531,869	264,042	4,857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1,079	0	31,079	27,711	0	3,36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95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00,448백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22.7%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92.5%인 92,883백만원이 징수되고 7.5%인 7,56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의 지방세는 90.4% 세외수입이 88.6%,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재원 등은 100% 징수되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93.6%가 징수되었고
-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13,75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5.3%인 11,735백만원은 징수되었으나
-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56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지방세부분 1,800백만원(94년도 1,09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745백만원(94년도 2,798백만원)등 5,545백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하여 42.4%가 증가되고
-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1,928백만원으로 94년에 대비하여 85.9%가 증가하는 등 94년도 대비 총 48%가 증가하고 있으나
- 결산 검사시 체납액의 과다 발생에 따른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방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련장부를 작성비치하여 미수납사유, 회수 및 변동사항 등의 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대장정리 및 관리가 부실하여 관련 체납액의 실재성 확인이나 회수 가능성 검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비 및 대책을 강구토록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으며
- 총수납액 92,883백만원과 세출예산현액 90,993백만원과의 차액이 1,890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세입예측을 보다 정확히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운영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95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지출 등 예산 성립 후의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90,993백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을 합한 81,348백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이 9,64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2,908백만원) 지역개발비(2,781백만원)와 주차장 특별회계(1,463백만원) 등의 불용액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1,718백만원에 대한 집행액 255백만원에 불과함을 볼 때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계획 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함.
- 익년도 이월액도 94년도 결산에 비해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10,044백만원에 이르는 것도 사업추진 시기의 지연 및 사전조사, 계획 등의 미비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예산 편성전에 미리 충분한 사업시행 시기의 조정과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사전 해결책을 강구하여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 함에 있어 결산상의 바람직한 사항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개선 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요 지

가.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96. 10. 21)

- 김희정위원 : 세입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 부분 규명(P 11)
 - 이석래위원 : 과년도 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부분 규명(P 18)
- ▷보충자료 서면 제출키로 함

- 체납액 결손관계 및 체납자 명단 전산화 추진 사항 규명
- 체납자 근절대책과 관련 부동산 공매처리 기준 설정 규명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있어 정수대비 보유액이 많은 사항규명(P 244)

○ 김 인위원 · 예산성립후 증가액부분에 있어 94년도 결산시 13,571,597,000원과 '95 결산시 13,572,797,000원과의 차액 1,200,000원에 대한 규명(P 12)

▷ 보충자료 서면 제출키로 함

- 결손처분 연도별 증가 사유규명(P 11 및 보조자료 P 13)

▷ 고액결손처분자 현황 서면 제출키로 함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내역 규명

▷ 명단 서면 제출키로 함

-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관리 규명(P 179)

- 공유재산 가액 산정기준 및 해당필지 증가 사유(P 239)

▷ 필지에 대한 자료 서면 제출키로 함

- 채권, 채무 내역 규명(P 226, 232)

▷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등 자료 서면 제출키로 함

-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예산 전용사항 규명(P 123)

○ 이수택위원 · 94년도와 대비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연도별 집행계획 관련사항 규명(P 179)

- 괴정2동사 사업비 집행 규명

○ 최병선위원 ·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지출내역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리 규명

- 주차장 특별회계 과다 불용액 규명(P 179)

○ 장용희위원 : 과오납 과다발생에 대한 해소 대책(P 11)

○ 이상은위원 · 결산서 작성의 세입결산에 있어 이체 등 증감액 표시 방법
규명(P 11)

· 세입금 미수납액 시효완성 및 재산압류종인 것 등 사유별
현황 규명 (보조자료 P 13)

▷ 성업공사 공매추진 사항 내역 서면 제출키로 함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계산에 있어 선박에 대한 재산
규명(P 240)

▷ 별도 규명하여 서면 제출키로 함

나.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96. 10. 24)

○ 이석래위원 : 결손처분과 고액채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상습채납자
고발, 금융자산 추적조치, 출국금지조치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치 방안 규명

○ 김 인위원 · 세입결산 부분 지역개발비 57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전부가 누락된 사유 규명(p 22)

▷ 구체적 사유 서면 제출키로 함

· 불용사유, 미집행 사유에 대한 분석 소홀

· 건강한 국토사업비 7300만원(p46),

기본조사 설계비 2억9천만원(p60),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1억2300만원(p108), 토지매입비 16억2천만원(p98)

등에 대한 사업변경 및 취소로 가용재원을 활용치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규명

- 예산운영포상비 40만원(p35) 시구행정운영수당 252만원(p49) 세정관리 급양비 100만원(p55)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후 전부 불용처리한 사항 규명
- 모자보호보상금 4,678천원과(p68) 청소사업비 일반수용비 12,300천원에 대한 예산전용 결정으로 사업비 증액 계상후 983만원과 1500만원을 오히려 불용처리한 사유 규명

○ 이해수위원 : 민간단체 보조에 대한 예산전용 9,070천원에 대한 사유규명 (p128)

▷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서면 자료 제출

- 공유재산 매각 142,130,670원에 대한 매각내역 규명과(p24) 토지분, 답에 있어 감액 내역에 관한 사항 규명(p239)
- ▷ 서면 자료제출키로 함
- 구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 구민이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하는 방안 검토
- 냉·난방기 겸용 무상양여 부분과(p245) 선박의 재산평가 분석에 대한 사항 규명(p240)

○ 이모영위원 : 노인복지 분야 노인교통비 부담금 내역 규명

○ 이수택위원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31건의 63억2500만원에 대한 명단을 확인한 바 저명인사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혜 소지 오해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규명

5. 토 론 요 지 : 송동후 위원

결산서 작성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사항에는 크다란 흠결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으로 원안에 찬성 의견을 개진함

6. 심사의견 및 특이사항

과정2동사 영업보상비 집행문제와 94년, 95년도 대비 결산서상의 이월액 총괄 부분 120만원 착오기재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지역개발비 57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전부가 누락된 사항과 불용액과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한 분석에 있어 표시방법 부실 문제등과 함께 세입결산 총괄부분의 결산서 작성 표시 방법 문제등은 향후 집행기관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답변 준비등에도 소관과장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됨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찬성 5명, 반대 4명)